

6. 都市交通整備促進法 施行令 改正令

大統領令 第15,097號 1996. 6. 29

주 요 골 자

- 가. 도시교통정비지역외의 지역에서 교통수요를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사업 또는 시설을 시행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되,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대폭 상향조정함(영 제13조 및 별표 1).
- 나. 교통영향평가서를 부실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교통시설현황을 토대로 교통개선대책을 강구한 경우, 교통계획·개발계획·도시계획도로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, 공사중의 교통저리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(영 제15조).
- 다.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미만인 혼잡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2회 이상 발생하고, 보행인교통사고가 주 5회이상 발생하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교통평가를 실시하도록 함(영 제25조).
- 라.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교통혼잡지역은 하루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차량의 평균통행속도와 평균정지지대시간 등을 기준으로 지정하되, 우회도로의 확보와 대체교통수반의 확충 등을 고려하도록 함(영 제32조).

개 정 이 유

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(1995. 12. 29, 법률 제5113호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